

국회의원(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487
----------	------

발의연월일 : 2025. 1. 14.

발 의 자 : 박형수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중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현승 · 인요한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운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는 1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등 대국민 ‘SNS 검열’을

선전포고하며 국민을 겁박함.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에 따라 일부 기사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전용기의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다음 이유에 따라 국회의원 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함.

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용기는 1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등 대국민 ‘SNS 검열’을 선전포고하며 국민을 겁박함.

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당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직후, SNS 검열을 운운하며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감. 이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태로 대국민 협박이며, 이는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자, 헌법상 검열금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임.

다.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에 따라 일부 기사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반인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전용기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6조 및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는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 전용기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